

#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춘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07
----------	------

발 의 년 월 일 : 2022년 03월 10일

발 의 자 : 김춘례 의원(1명)

찬 성 자 : 김소영, 김정태, 김제리,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희걸,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송아량,  
안광석, 오한아, 이영실,  
이정인, 이종환, 장상기,  
전병주, 전석기, 최영주,  
홍성룡, 황규복 의원(23명)

## 1. 제안이유

- 시장이 선정하는 우수 숙련기술인의 명칭을 “최고장인”으로 변경하여 우수 숙련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최고장인에 대한 예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우수 숙련기술인의 명칭을 ‘최고장인’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 나. 종전의 우수 숙련기술인을 최고장인으로 변경하고, 문구를 조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숙련기술장려법」
-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최고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해당분야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숙련기술인 중에서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우수 숙련기술인”을 “최고장인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을 “(최고장인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 숙련기술인”을 “최고장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동일직종”을 “동일직종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입상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고 동일직종”을 “입상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고, 동일직종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한 명칭,”을 “최고장인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자 지원)”을 “(최고장인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인”을 “최고장인”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u>&lt;신 설&gt;</u></p> <p>3. (생략)</p> <p>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p> <p>① (생략)</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p>1. <u>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및 지원계획</u></p> <p>2. ~ 5. (생략)</p> <p>제5조(<u>우수 숙련기술인 선정</u>) ①</p> <p>시장은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u>우수 숙련기술인</u>으로 선정할 수 있다.</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u>2의2. “최고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해당분야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숙련기술인 중에서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p>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u>최고장인의</u> ----- -----</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5조(<u>최고장인의 선정</u>) ① ----- ----- ----- ----- <u>최고장인</u>----- -----.</p>

1. 산업현장에서 우수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일직종 생산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전국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고 동일직종 생산현장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②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한 명칭, 세부 선정기준,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자 지원) 시장은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우선 추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 동일직종의 -----  
-----

2. ----- 입상 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고, 동일직종의 ---  
-----  
---

② 최고장인의 -----  
-----  
-----  
---

제6조(최고장인에 대한 지원) ---  
----- 최고장인-----  
-----  
-----  
-----  
-----.